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678호

나. 제 안 자 : 이광호 의원 외 9명

다. 제안일자 : 2019년 5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역본부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노사관계의 발전 및 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과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노사관계의 발전과 상생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서울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¹⁾를 근거로 서울 소재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단체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임.
-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전인 1995년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지원을 시작하였음.

1)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연번	단체명	의장	가입조합	조합원	사무소	지원기간
1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서종수	480개	385,484명	서울시노동자복지관	1995년~
2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울본부	최은철	206개	568,516명	강북노동자복지관	2013년~

- 그러나 최근 3년간 노동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민주노총은 2017년부터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비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19. 1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기관명	2016년			2017년			2018년		
	소요예산	집행액	비율	소요예산	집행액	비율	소요예산	집행액	비율
한국노총	2,206,000	2,135,619	97%	2,356,000	2,072,235	88%	2,256,000	2,241,361	99%
민주노총	1,500,000	790,733	53%	2,000,000	-	-	350,000	-	-

※ 민주노총 : 사업계획 제출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 미교부(2017년), 사업계획서 미제출(2018년)

- 이에, 서울시는 올해 민주노총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한국노총에만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노동법률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22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년 예산액	2019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2,256,000	2,256,000	-	-
노동법률 지원	123,000	123,000		
노동조합교육사업	637,000	637,000	△10,000	사업비 변경예정
노동절 기념행사	60,000	60,000	-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	65,000	-	-
노사민정 워크숍	12,000	12,000	-	-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70,000	-	-
국제교류 및 ILO 총회참가	139,000	139,000	10,000	사업비 변경예정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5,000	45,000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원	1,105,000	1,105,000		

다.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역본부이외에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노동관련 단체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이 특정단체에만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 존중의 사회 기조를 반영하고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한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권리보호,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라.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안 제4조)

- 안 제4조는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면서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현행과 같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역본부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학자금 지원 사업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 시킬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관리측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로 보임.
 - 실제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4,045개소(2018)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2,179개소(2019.3)임.
 - 또한, 2016년말 현재 서울시 노동조합은 총 1,507개(한국노총 471, 민주노총 202, 전국노총 2, 공공노총 5, 미가맹 827)이며 전체 조합원수는 약 1,154,686 명임.²⁾

- 현행 조례는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노동단체는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의미함.³⁾
- 이 경우 개정안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에 ‘노동관련 단체’가 노동자가 조직한 ‘노동단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만으로 제한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지원대상 등을 수정하여 “비영리법인·단체”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정 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u>조례</u>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u>조례</u>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u>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u>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 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 2016.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3)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노동단체”를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노동자 이외의 사람이 조직한 단체 또는 법인은 노동단체로 볼 수 없을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조(지원범위) ①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p> <p>5. (생략)</p> <p>② (생략)</p>	<p>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p> <p>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p> <p>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p> <p>제4조(지원범위) ① <u>시장</u>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4. 제3조제1호-----</p> <p>-----</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p> <p>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p> <p>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p> <p>제4조(지원범위) ① <u>시장</u>은 제3조의 단체·법인이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3조제1호-----</p> <p>-----</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보조의 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 공동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2개 이상 중소기업 노동조합(조합원수가 300명 미만인 노동조합을 말한다)
4.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5. 기업단위노동조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사업에 한정한다)
6. 총연합단체의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노동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